

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증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

1998. 6.17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안 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 안 : 1998년 6월 9일 제출
- 회 부 : 1998년 6월 9일

3. 제안이유

-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(법률 제5393호, 97.8.28 개정공포) 및 같은법시행령 (대통령령 제15672호, 98.2.24 개정공포) 이 98.3.1일부로 시행되면서
- 지방조정위원회의 처리대상 항목이 일부 추가되거나 용어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이 개정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1) 위원회 명칭 변경

-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(지방환경위원회) ⇒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(지방조정위원회)

2) 위원의 임기조정 (3년 ⇒ 2년)
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

3) 조정비용(수수료)에 관한 조문변경

-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알선·조정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하는자 및 조정에 참가를 신청하는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음

5. 검토의견

0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용어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시료됨